

문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과장 이인수 042-481-5331
		사무관 정부용 042-481-8203
	2016년 3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10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디자이너·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출원 및 분쟁대응 전략 제공

- 강한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A to Z,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디자이너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원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정리한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SIGN InterPlay)'을 디자인맵*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맵 : 국내·외 디자인 공보의 검색, 디자인 출원전략·분쟁 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자인권 포털 사이트(designmap.or.kr)

이번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출원 과정에서부터 권리행사 단계까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디자인 보호 전략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에서 다루어지는 소재는 지난해 특허청이 지역디자인센터와 공동 개최한 2015 디자인보호포럼, 찾아가는 디자인대학 세미나 및 기업 간담회 등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질의사항들을 선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 해답을 정리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예컨대, ▲디자인 권리를 폭넓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부분디자인), ▲해외 디자인권 획득전략, ▲로고·캐릭터 보호를 위한 다각적 전략, ▲선행디자인 검색방법, ▲분쟁발생시 대응요령 등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출원 및 분쟁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핵심 노하우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디자이너,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을 디자인 권리로서 확보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주체인 디자이너, 스타트업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창작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정부용 사무관(042-481-8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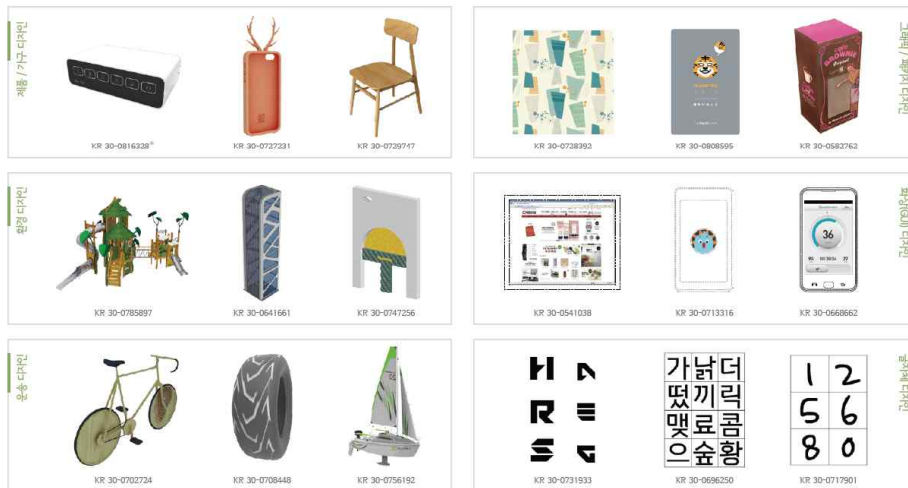
o 디자인맵(www.designmap.or.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총 100페이지 분량)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외에도 환경 디자인, 운송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화상(GU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 이미, KR 30-0000000은 한국특허청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간략히 표기한 것임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딘가에 공개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혹이나 심사관이 공지된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해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나중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어 불완전한 권리 상태가 된다.

공지의 예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1. 전시회·전시관 디자인
2.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
3. 잡지, 신문, 카탈로그, 논문 등에 게재된 디자인
4. 공모전에 출품해 공개된 디자인
5. 세미나, 강회에서 공개한 디자인
6.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7.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디자인 등

많은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사이트나 홈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들인 졸업 작품을 디자인권리화 없이 졸업 전시회에 공개한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라이선스를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가구브랜드 매터앤매터(Matter and Matter)는 2010년 리빙디자인페어 전시회에 레그 চে어(leg chair)를 선보였다. 그 후 매터앤매터는 C 사의 레그 식당 일부에 레그 চে어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국내 큰 가구 회사(A)에서 레그 চে어와 흡사한 의자를 C 사의 레그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 있었다. 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변리사를 찾아갔으나, 처음 디자인을 공개한 리빙디자인페어에 전시한 지 1년이 지나 다는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레그 চে어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사에도 경고장을 보냈으나 레그 চে어는 매터앤매터에 디자인권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매터앤매터의 레그 চে어 A 사의 의자

· 이미지 출처 : <http://matterandmatter.com/ko/>, A 사 홈페이지(리뷰)

2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

관련디자인제도의 활용 전략

1 |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출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과연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이렇듯,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 시 유사성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더군다나 디자인은 한 번 창작되면 변형된 디자인들이 계속적으로 창작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서 일부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나의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유사범위)를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유사디자인제도가 관련디자인제도로 변경됨) (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보호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한다.

기본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참고 2

디자인맵(designmap.or.kr) 서비스 화면

o 디자인맵 메인화면 및 디자인 분쟁사례 콘텐츠



o 주요국 등록디자인 공보 검색(PDF 원문보기, 디자인심사 참조자료 등)

